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81
----------	-------

발의연월일 : 2026. 1. 20.

발 의 자 : 배준영 · 안철수 · 김용태
김미애 · 김성원 · 김소희
송석준 · 우재준 · 이종욱
한지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와 그 부품의 정비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에 대한 정비의 경우 감독체계가 명확히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외국 국적의 항공기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제3자를 통해 정비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비조직인증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국 항공사가 국내에서 정비조직인증을 받지 않은 외국 법인(페이퍼컴퍼니 등)에 정비를 위탁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정비업자에 외국의 항공기 정비업자도 포함하도록 하여 외국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1항).

법률 제 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 본문 중 “항공기와”를 “항공기 및 대한민국에 착륙한 외국 국적의 항공기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u>항공기와</u>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의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인력, 설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정비조직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① ---- ----- ---- <u>항공기 및 대한민국에 착륙한 외국 국적의 항공기와</u>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